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 등 추가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46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 등 추가	3
※ 참고자료	11
1. 보험사무대행기관 개요 및 현황	11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21일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 단체,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무소 및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모두 가능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달리,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및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사무대행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4대 보험 관리 체계간 서로 차이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법인 형태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정되고 있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및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4대보험사무대행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노무사,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

Ⅲ. 검토의견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 등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법인 아닌 개인사무소 형태의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를 포함시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u>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u>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 ----- ----- ----- ----- <u>공인노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또는 경영지도사</u> ----- ----- ----- ----- -----

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⑦ (생략)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3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고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제33조제1항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②「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④공인노무사, ⑤세무사임.

그리고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란 법인의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을, 공인노무사의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을,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회계법인 등의 형태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으나, 개인으로서는 경력 등을 불문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음.

한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각각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회계법인·세무법인·노무법인·법무법인·경영지도법인·행정사법인과 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변호사·경영지도사·행정사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¹⁾ 건강보험의 경우 회계·세무·노무법인(개인사업자로 회계사·세무사·노무사를 포함한다), 행정사, 한국경영원 등이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²⁾

1)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서비스 처리기준」

제3조(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업무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공단에 신청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1.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법무법인(개인사업자로서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포함)
2. 경영지도법인(개인사업자로서의 경영지도사 포함), 단, 전문분야가 인적자원관리인 자에 한함
3. 행정사법인(개인사업자로서의 행정사 포함), 단, 일반행정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4. 4대 사회보험 신고·신청 업무에 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 등

2)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

제5조(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공단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제3조제1항에 따라 웹EDI를 통하여 대행 신고할 수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이 된 사업장으로 회계·세무·노무법인(개인사업자로 회계사·세무사·노무사를 포함한다), 행정사, 한국경영원 등으로서 공단에 신청하여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① 개인사무소 및 법인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이 모두 가능한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와 달리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에 대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 ②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③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4대 보험 관리 체계간 서로 차이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법인 형태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정되고 있는 공인회계사, 행정사 및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 10월말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 7,631개소가 인가를 받았는데, 이 중 개인세무사가 4,280개소로 과반을 차지하고 세무법인과 개인세무사가 전체의 77.7%이며, 노무법인(912개소)과 개인노무사(502개소)는 전체의 18.6%임. 한편 공인회계사, 행정사 및 경영지도사는 현재 법인 형태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는바 회계법인은 159개소, 법무법인과 행정사법인은 10개소, 기타 법인이 14개소로 나타나며 회계법인은 전체의 2.1%, 법무법인과 행정사법인은 0.1%임(참고자료 참조).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자격을 갖춘 사람(「공인회계사법」 제2조 및 제3조)이라는 점과 현재로서도 회계법인 159개소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으로서의 공인회계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확대한다고 하여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비하여 4대보험사무대행 제도의 정합성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가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인회계사들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로 한정된 법 제3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에 대하여 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2024. 2. 28. 헌법재판소는 2020헌마139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당수의 공인회계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까지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심판 청구 기각결정을 하였음.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게다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는 지금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 공인회계사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며 개인 공인회계사에게도 일정한 직무경력을 갖추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킬 경우 사업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공익을 증진시키는 면도 있을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4명의 반대의견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필요한 6명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함).

이처럼 공인회계사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취지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반대의견의 취지를 살피면, 비록 현행법이 위헌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나 입법을 통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공익을 증진시키는 면이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령이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에 대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하여는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것을 정하며 직무경력 2년 이상과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시행령 제44조)을 고려하면,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에 대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노무사, 세무사에 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보험사무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는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전문자격의 업무성격, 보험사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인 전문자격사 중 현재 보험사무대행기관인 세무사와 업무 범위가 유사한 공인회계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단체들이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① 한국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 비추어 볼 때 회계사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공인노무사, 세무사만으로도 전국 사업장의 4대보험 사무대행에 필요한 인적 인프라가 충분함에도 4대보험 관련 전문성 및 업무연관성도 낮은 회계사 등에게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과당경쟁, 불성실신고, 보험행정 비효율과 혼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② 한국공인노무사회 역시 고용·산재보험 사무에는 근로자성 판단과 임금 체계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한바 노동 및 사회보험관계법령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타 직역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우려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 반대로 ③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행법은 개인자격사에 대한 법 적용의 형평성 및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고, 다른 4대보험사무와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요건 차이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

래하는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④ 대한행정사회 역시 현행법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달리 고용·산재보험의 개인 전문자격사 자격범위를 제한하여 영세사업자와 대행기관에게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간 업무수행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는 개정안 찬성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

참고

보험사무대행기관 개요 및 현황

-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위임받아 대행
 - (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 ▲업종별 연합회, ▲주무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노무·세무법인 등), ▲개인노무사(2년이상 경력) ▲개인세무사(2년이상 경력, 인가교육 이수)
 - (대행업무) 보수총액 및 재산·확정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 신고,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신고,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등
 - (지원금)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과세소득이 3억원 미만인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대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제2024-92호)〉

지원금 종류	지 원 내 용	
보험료 납부지원금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별목업)의 보험료를 80% 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 사업주 당 반기 16,000원 지원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피보험자신고(고용)	사업주 당 분기 12,000원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주 당 15,000원 지원)
	고용정보신고(산재)	
	월평균보수변경신고	
	보수총액신고	○ (근로자) 사업주 당 연 18,000원 지원(5인 이상 사업장은 연 24,000원) ○ (예수인) 사업주 당 연 5,000원(1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0,000원) *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로 보수총액 신고시 10,000원 추가 지원
사업장 가입지원금	미가입사업장을 발굴, 성립신고 한 경우 1개소 당 40,000원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주 당 50,000원)	

- 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기관 7,631개소 인가,
 보험사무대행지원금 204억원(고용·산재 각 102억) 지급('25.10월말
 기준)

(단위: 개소, %, 백만원)

구분	총 계	노무 법인	개인 노무사	세무 법인	개인 세무사	회계 법인	경영자 협회	상공 회의소	법무법인 행정법인	중소기업 전문기관	업종별 연합회	기타 법인
인가 기관수	7,631 (100)	912 (12.0)	502 (6.6)	1,652 (21.6)	4,280 (56.1)	159 (2.1)	7 (0.1)	7 (0.1)	10 (0.1)	14 (0.2)	74 (0.9)	14 (0.2)
지원금 지급액	20,497 (100)	9,326 (45.5)	1,939 (9.5)	2,994 (14.6)	4,603 (22.5)	192 (0.9)	91 (0.4)	1 (0.0)	12 (0.1)	1108 (5.4)	98 (0.5)	133 (0.6)
위탁 사업장	2056,101 (100)	680,180 (33.1)	149,001 (7.2)	435,973 (21.3)	615,229 (29.9)	52,991 (2.6)	8,769 (0.4)	920 (0.0)	660 (0.0)	35,286 (1.7)	19,791 (1.0)	57,301 (2.8)

*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소기업진흥법상 지
 정기관)